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으로 재향군인회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.
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운영비 지원근거 신설(안 제6조제6호)
 - 재향군인회 지원대상사업에 “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” 를 규정하였음
 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 - “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” → “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” , “이비자함” → “이바지함” (안 제1조)
 - “군수” → “고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” , “사업” → “사업과 운영 등” , “범위 안” → “범위” (안 제5조)

- 상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으며,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 : 2024. 1. 24. 원안가결